

2024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접수처

권역	접수처	연락처	보내실곳
서울특별시 경기도	본회	02)470-087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골재회관 7층
인천광역시		02)470-0150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회	033)243-703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57-11 KT석사빌딩 4층
충청북도	충북지회	043)237-954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53-1, 세광로알빌딩 402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세종 충남지회	042)826-1791	대전시 동구 용전동 21-3 종근당빌딩 603-3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남지역본부	053)564-1019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75-1, 3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호남지역본부	062)716-2960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2번길 4, 2층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골재채취업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평가받으려는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
- 2024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24.2.15일까지 신청한자)로서 별표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 접수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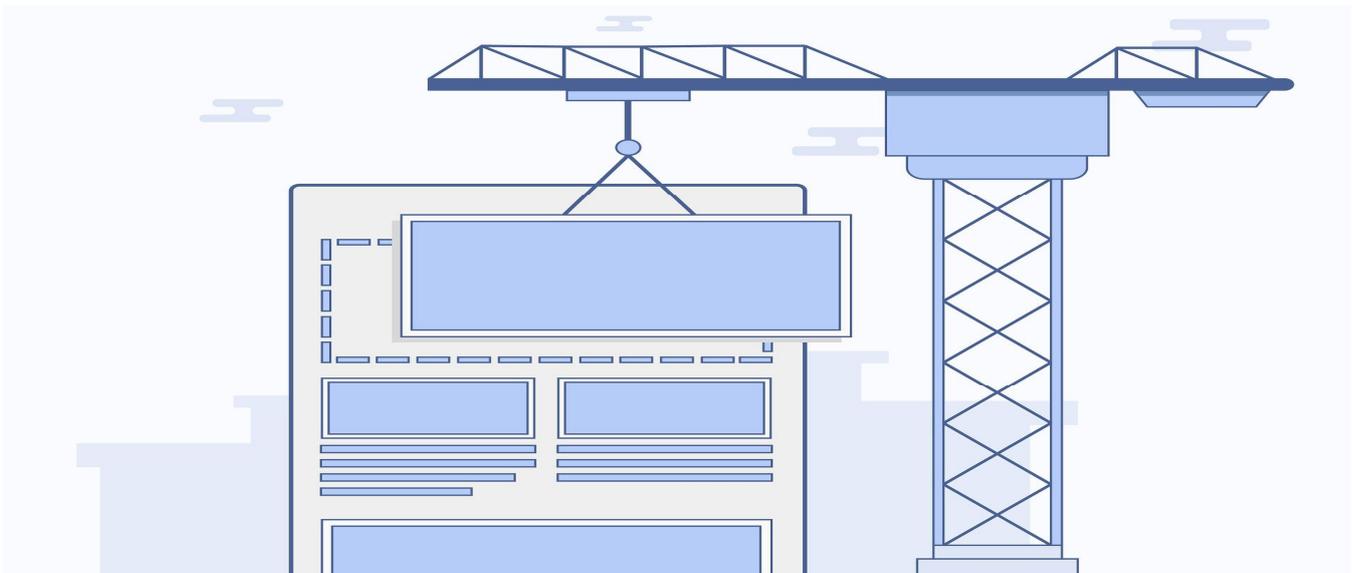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 한국골재협회 본회 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지회
- (우05621)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골재회관 7층,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앞

|| 문의 ||

- 전화 : 02-470-0871, 02-470-0150 · 팩 스 : 02-477-7085



1. 골재채취능력평가 기본사항

1. 골재채취능력평가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실·부적격 업체 배제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써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공시일 전날까지 적용
-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골재채취업종별로 평가한다.(다만,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연안, 서해EEZ허가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2. 법적근거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평가 사항)·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 「골재채취법」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수수료)

3. 평가대상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기간내에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세척등의 신고 또는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계획이 있는 업체로써, 2024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능력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능력평가 수수료

- 금 액 : 평가건당 194,700원(부가세 포함)
- 예) 신청업종 : 산림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 2건
바다골재채취업(연안), 바다골재채취업(서해EEZ) → 2건
- 납부방법 : [한국골재협회 계좌 납부\(하나은행 : 386-910032-45104\)](#)

2.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text{골재채취능력} = \text{실적평가물량} + \text{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pm \text{신인도평가물량}$$

2.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별 채취능력(바다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은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가. 장비의 구분

업종별	주 시설·장비	보조 시설·장비
수중골재채취업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로더, 굴착기, 쇄석기, 선별기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로더, 굴착기, 기중기, 제염시설
산림골재채취업	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육상골재채취업	굴착기	로더, 선별기
골재선별·파쇄업	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제염시설	로더, 굴착기

나. 주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다.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4. 위 산식 중 신인도 평가물량은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능력 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증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증량물량에서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나목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감량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20으로 한다.

가.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 1)신용평가등급이 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이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1(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
- 3)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 100분의 2
- 4)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
- 5)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
- 6)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 7)보유 중인 보조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장비 1대 당 100분의 1(최대 100부분의 5까지 인정한다)
- 8)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 100분의 3

나.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 1)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자본금(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상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억원당 100분의 1
- 2)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시설·장비 1식당 100분의 5
- 3)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되는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
- 4)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 경우 : 다음이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 가)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 100분의 5
 - 나)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 100분의 10
 - 다)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 제출 시 : 100분의 15
- 5)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건수(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별로 100분의 1
- 6)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 건수별로 100분의 2
- 7)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

3. 골재채취능력평가 절차도

신청접수

- 한국골재협회 본회(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또는 신청인 소재지 해당지회·지역본부 우편(방문)접수



서류보완

- 신청인의 제출사항 검토 후 보완사항(필수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Fax 발송
- 한국골재협회 본회(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또는 신청인 소재지 해당 지회·지역본부 우편(방문)제출



골재채취능력평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관련 【별표2】에 따라 평가 실시



2024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 결과서 발급가능일자 : 평가완료일자 ~ 2025년 6월 30일
-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서식(첨부서식 참조) 작성 후 Fax신청
- 수령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수령

➤ **골재채취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는 반드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개정 2021. 8.27>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전화·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개 업종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바다골재 채취업**의 경우 **연안, 서해EEZ를 각각 구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시 **능력평가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반드시 평가 신청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 **평가 건당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연안 평가 및 서해EEZ평가 각 각 별도 납부)
4. 2024년 골재채취능력평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골재채취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골재채취능력평가 서류의 제출 시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된 경우에만 골재채취능력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골재채취업 등록증 제출 시 뒷면 변경사항·행정처분사항·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전자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용·시범용은 불가**합니다.
9. 「선박법」에 의한 선박원부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용·시범용은 불가**합니다.
10. **바다골재채취업 연안 평가** 제출서류 중 **접안시설(부두)길이 증명서류**는 항만공사자료, 항만시설운영세칙, 측량자료 등 **부두길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일반 예·부선** 선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인선 항해검사증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등록원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발행일 기준 검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용·시범용은 불가**합니다.
13.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아니한 **쇄석시설(쪼크라샤, 콘크라샤, 스크린 등), 선별기, 제염 시설**은 **제작증명서(시간당 처리능력기재) 및 매매계약서, 시설·장비 칼라사진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금전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 **쇄석시설이 2식 이상인 경우 각각의 쇄석시설에 대한 사진 제출**

(쇄석시설 1식= 쪼크라샤 + 콘크라샤 + 스크린)

※ **선별기에는 살수설비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설비에 대한 사진제출**

※ **제염시설에는 적치설비(적치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폐형 구조), 살수설비 및 배수설비(적치설비의 배수물이 집수되는 구조)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설비에 대한 사진 제출**

14. 업종별 필수 **기술인력**의 경우 아래 **해당자격증 사본을 식별가능 하도록 칼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해사 및 기관사 : 해기사 자격증
- 쇄석시설 : 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쇄석기), 광산보안기능사 이상 등
- 굴삭기 : 굴삭기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 로더 : 로더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더)
- 천공기 : 천공기 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천공기). 다만, 2012년8월23일 이전의 공기압축기 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공기압축기)는 가능
- 준설선 : 준설선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준설선)
- 선별기 또는 제염시설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 특수용접 ·전기전자직무분야 중 전기 ·건설직무분야 중 배관

15. 기술인력 **고용여부 확인서류**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재무제표**는 2023년도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무대리인의 확인 필수)**

17.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조회기간을 반드시 일치(2021년1월~2023년12월)**시켜 제출하여 하며, **2021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자의 경우 설립년 1월~2023년12월까지 제출**가능 합니다.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총량의 100분의15 감량**)

18. 실적평가는 2021년1월부터 2023년12월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채취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9. 실적평가 시 해당업종별로 골재채취허가증 또는 골재선별·세척(파쇄)신고필증 및 골재선별·세척(파쇄)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하며, **허가(신고)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신인도 관련 서류 중 골재에 대한 KS인증을 받은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안전, 품질 관리 기사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고용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골재채취업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초 골재채취업 등록일이 확인 가능한 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2]제4호가목8)에 따른 **친환경 시설·장비 인정 기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249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굴착기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전기굴착기 설치·운영 사진
 - 비산먹지억제시스템 : 장비 매매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설치·운영 사진
 - 차폐형 쇄석시설 : 차폐형 쇄석시설 정면 및 측면 사진, 내부 쇄석시설 설치사진
2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2]제4호가목8)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시설·장비로 증량을 받은 전기굴착기의 경우** [별표2]제4호가목7)의 **초과보조시설·장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2 이상의 친환경 시설·장비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량비율은 최대 100분의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총량의 100분의25가 감량**됩니다.
26.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7.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증량항목 및 감량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2]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정시: 6월 30일 공시 수시: 30일
신청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평가받으려는 업종	전화번호 : (FAX)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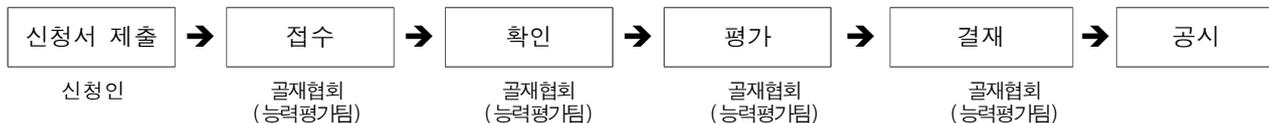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대차대조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 업종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용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일자
	제출처
	우편물 수령지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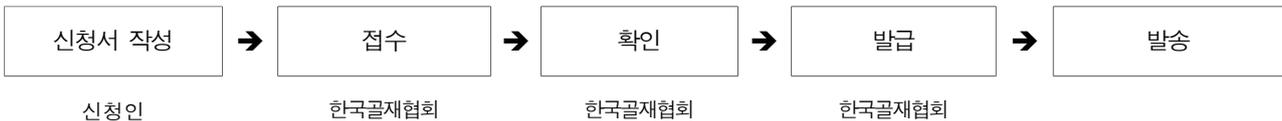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골재채취 업종별 골재채취능력평가 제출서류

(P5~P7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종	필수제출서류				신인도 관련서류 (해당자만 제출)
	시설·장비	기술인력	채취실적 (‘21.1.1~’23.12.31)	기본서류	
육상 골재채취업	1. 굴삭기 2. 로더 3. 선별기	1.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2.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3. 전기기능사 사본 등 4.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육상골재채취허가증 사본 2.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보고서 사본 ※ 허가·실적이 없을 경우 미제출	1.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2023년 재무제표 6.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21.1.1~’23.12.31)	1. 골재에 대한 KS 인증서류 2. 환경, 안전, 품질 관련 기술인력 추가 고용 여부 3. 영업기간 10년이상 증명 서류 4. 초과 보조시설· 장비 5. 신용평가 AA등급 6. 최근 2년 이내 골 재채취업 관련하여 환경관련 위반으로 과징금, 징역, 금고, 벌금형 받은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징역, 금고, 벌금 형 받은 경우
수중 골재채취업	1. 준설선 2. 굴삭기 3. 로더 4. 선별기 또는 쇄석기	1. 준설선운전기능사 사본 2.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3.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4. 전기기능사 사본 등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수중골재채취허가증 사본 2.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보고서 사본 ※ 허가·실적이 없을 경우 미제출		
산림 골재채취업	1. 쇄석시설 2. 굴삭기 3. 로더 4. 천공기	1. 쇄석기운전기능사 사본 2.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3.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4. 천공기운전기능사 사본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토석채취허가증 또는 쇄석신고수리필증 사본 -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보고서 사본 ※ 허가·실적이 없을 경우 미제출		
골재 선별파쇄업	1. 쇄석시설 2. 굴삭기 3. 로더	1. 쇄석기운전기능사 사본 2.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3.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4.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신고 수리공문 사본 - 골재선별·쇄척(파쇄)등의 신고내용이행여부 확인증 사본 - 신고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 보고서 사본 ※ 신고·실적이 없을 경우 미제출		

골재채취업종	필수제출서류				신인도관련 (해당자만 제출)
	시설·장비	기술인력	실적관련서류 (‘21.1.1~’23.12.31)	기본서류	
바다 골재채취업 (연안, EEZ)	1. 해상화물운송 사업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2. 선박원부 3. 선박검사 증서 4. 선박검정보고서 5.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확인 서류 6. 현재 채취선에 장착된 펌프사진 7. 예인선 항해검사증서(일반 예·부선일 경우) 8. 접안시설 및 야적장 - 부두길이 증명서류(연안일 경우) - 접안시설(항만시설) 사용 증명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임대 또는 소유 증명서류 9.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 구매 영수증 등 소유 증명 서류 10. 굴삭기 및 로더 11. 제염시설 - 제작증명서(시간당 처리능력 기재) - 매매계약서 - 제염시설 전경사진(칼라)	1. 항해사 자격증 사본 2. 기관사 자격증 사본 3.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4.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5. 전기기능사 사본 등 6.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바다골재채취허가증 사본 2.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보고서 사본 ※ 허가·실적이 없을 경우 미제출	1.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5. 2023년 재무제표	1. 골재에 대한 KS인증서류 2. 환경, 안정, 품질 관련 기술인력 추가 고용 여부 3. 영업기간 10년 이상 증명서류 4. 초과 보조시설·장비 5. 신용평가 AA 등급 6. 최근 2년 이내 골재채취업 관련하여 환경 관련 위반으로 과징금, 징역, 금고, 벌금형 받은 경우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1. 제염시설 - 제작증명서(시간당 처리능력 기재) - 매매계약서 - 제염시설 전경사진(칼라) 2. 굴삭기 및 로더 3.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토지등기부등본, 임대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 구매 영수증 등 소유 증명 서류	1. 굴삭기운전기능사 사본 2. 로더운전기능사 사본 3. 전기기능사 사본 등 4.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신고 수리공문 사본 2.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이행여부 확인증사본 3. 신고권자에게 제출한 채취실적 보고서 사본	6.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21.1.1~’23.12.31) 7.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징역, 금고, 벌금형 받은 경우	